

2026. 9.

중국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법해석 개정 - 공표 판단기준, 공공장소 미술저작물 합리적 사용 및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허락의 디지털 적용범위 구체화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손한기

1. 개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8월 19일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 개정에 관한 결정(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的决定, 법석[2026]18호)을 공포하고, 8월 20일 이를 발표하였다. 2026년 5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976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02년에 제정되고 2020년에 1차 개정된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02]31号)의 2차 개정으로, 2020년 개정 중국 「저작권법」에 맞추어 저작물의 공표 판단, 합리적 사용,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허락 등 디지털 환경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쟁점의 재판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¹⁾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표'는 권리자의 직접 공개·허락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면 성립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둘째, 합리적 사용 대상 미술저작물의 설치·전시 장소를 '옥외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로 확대하되, 그 성과물의 재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셋째,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허락의 적용범위를 내용과 지면 형식이 일치하는 디지털판까지 구체화하면서도, 신문·정기간행물과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 간, 그리고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 상호 간의 전재에는 법정허락을 배제하였다. 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주요내용

1) '공표(公之于众)' 판단기준의 명확화

원 사법해석 제9조(개정 후 제8조)는 '공표'를 저작권자가 스스로 공개하거나 허락하여 공개한 경우로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고, '공표'를 작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1) 中新网(중국신문망), 「9月1日起施行 最高法发布著作权民事纠纷司法解释修改决定」, 2026. 8. 20. (<https://www.chinanews.com.cn/fz/2026/08-20/10680840.shtml>)

공개되었는지 여부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의사나 허락과 무관하게, 제 3자의 침해행위로 저작물이 공개된 경우에도 공표가 성립할 수 있음이 명확해졌다.²⁾

2) 공공장소 미술저작물(公共场所的美術作品) 합리적 사용의 확대와 제한

원 사법해석 제18조(개정 후 제16조)는 합리적 사용(合理使用)의 대상이 되는 미술저작물이 설치·전시되는 장소를 '옥외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로 정비하여, 2020년 개정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 제10호와 정합성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사회 공중이 활동하는 장소에 설치·진열된 조각·회화·서예 등 미술저작물이라면, 옥외뿐 아니라 미술관·전시관 등 실내 공간에 설치·전시된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모사·회화·촬영·녹화한 성과물을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원작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전시·공개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다.³⁾

3)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허락의 디지털 경계

개정 사법해석 제17조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전재(转载)를 '신문·정기간행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출판되는 종이 신문·정기간행물 및 그 내용과 지면 형식이 일치하는 디지털판이, 다른 신문·정기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작품을 게재하는 행위'로 구체화하였다. 즉 법정허락의 대상은 종이 신문·정기간행물뿐 아니라 그 내용·지면 형식이 일치하는 디지털판까지 포함된다. 다만 전재 시 피전재 작품의 저작자와 최초 게재 신문·정기간행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향 제거·사과 등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⁴⁾ 반면 신문·정기간행물과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 간의 상호 전재,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 상호 간의 전재에는 법정허락이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허락과 보수 지급이 필요하다는 제2항을 신설하였다.⁵⁾ 이는 종이 신문·정기간행물의 내용과 지면 형식이 일치하는 디지털판에 의한 전재와,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관여하는 상호 전재를 구별하여 온라인 전재 법정허락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개정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관련 약관 문제에 관한 해석」 제8조: "著作权法第十条第一款第一项规定的'公之于众',是指将作品向不特定的人公开,但不以公众知晓为构成条件。"(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공표'란 저작물을 불특정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중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개정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관련 약관 문제에 관한 해석」 제16조 제2항: "对前款规定艺术作品的临摹、绘画、摄影、录像,可以依法对其成果以合理的方式和范围再行使用,但是未经著作权人许可不得以相同方式设置、陈列或者公开传播。"(전항이 정한 미술저작물을 모사·회화·촬영·녹화한 자는 그 성과물을 합리적인 방식과 범위 내에서 재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진열하거나 공개전달할 수 없다.)

4) 개정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관련 약관 문제에 관한 해석」 제17조 제1항: "著作权法第三十五条第二款规定的转载,是指报纸、期刊主管部门批准出版的纸质报纸、期刊以及与其内容和版面格式相一致的数字化版本登载其他报刊已发表作品的行为。转载未注明被转载作品的作者和最初登载的报刊出处的,应当承担消除影响、赔礼道歉等民事责任。"(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전재란, 신문·정기간행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출판되는 종이 신문·정기간행물 및 그 내용과 지면 형식이 일치하는 디지털판이 다른 신문·정기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재 시 피전재 작품의 저작자와 최초 게재 신문·정기간행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향제거·사과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5) 개정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관련 약관 문제에 관한 해석」 제17조 제2항: "报纸、期刊与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之间相互转载、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之间相互转载已发表的作品,不适用前款规定,应当经过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신문·정기간행물과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 간,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 상호 간에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상호 전재하는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번 개정은 급진적 제도 변화라기보다 그간의 재판 실무 축적을 반영한 실무적 정비에 가깝다. 그러나 그 함의는 작지 않다. 저작권법상 공표(公之于众)의 판단기준이 저작물의 객관적 공개 사실을 중심으로 정비되었고, 공공장소 미술저작물의 합리적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도 재사용 방식에 대한 제한이 함께 도입되었으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관여하는 상호 전재에는 저작권자의 허락과 보수 지급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사법해석 차원에서 명확히 되었다.

한국 언론사·콘텐츠 사업자가 중국 내에서 기사·사진·영상 등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전재 문제에 대응할 때, 특히 신문·정기간행물과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 간, 또는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 상호 간의 전재에는 제17조의 법정허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미술저작물이 중국 내 공공장소에 전시되는 경우, 그 촬영·녹화물의 재이용 범위와 한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정 사법해석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관련 사업자는 개정 내용에 따른 실무상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中新网(중국신문망), 「9月1日起施行 最高法发布著作权民事纠纷司法解释修改决定」, 2026. 8. 20. (<https://www.chinanews.com.cn/fz/2026/08-20/10680840.shtml>)
- 张玲娜(上海市协力律师事务所 高级合伙人), 「从"补丁"到"体系": 著作权司法解释修改的三重趋势信号」, 2026. 8. 20. (https://mp.weixin.qq.com/s/nRiSkKE9hI_6yuQMTh8G9w)
- 최고인민법원, 「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的决定」(법석[2026]18호), 2026. 8. 19. 공포, 2026. 8. 20. 발표, 2026. 9. 1. 시행.